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gional Culture Information System

2021. 3.

KCIS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한국문화정보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관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연 구 총 괄: 김 범 환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연구관리담당: 류 지 현 (한국문화정보원 책임연구원)

수 탁 기 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정 상 우 (인하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 강 은 영 (인하대학교)

<차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Ⅱ. 주요 연구내용 ····· 2
1. 고시 및 표준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2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고시 제정안 연구 ····· 2
3. 지역문화진흥 관련 표준조례안 제시 ····· 2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4
1. 연구 방법 ····· 4
2. 연구 절차 ····· 4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제2장 지역문화진흥 하위법령 정비 배경 및 필요성 ····· 5
Ⅰ. 「지역문화진흥법」 하위법령 정비 배경 ····· 5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배경 ····· 5
2. 「지역문화진흥법」 1차 개정 ····· 6
3. 「지역문화진흥법」 2차 개정 ····· 7
Ⅱ. 하위 법령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8
1. 「지역문화진흥법」 2차 개정의 의의 ····· 8
2.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소요 ····· 9
Ⅲ.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0
1. 개요 ····· 10
2. 주요 내용 ····· 10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소요 ····· 11

제3장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시안 ····· 12
Ⅰ. 고시의 제정 필요성 ····· 12
1. 행정규칙 및 교시의 의의 ····· 12
2. 행정규칙 및 고시의 효력 ····· 12
3. 고시 제정의 상위법상 근거 ····· 13
Ⅱ. 정보시스템 관련 유사 사례 ····· 14
1. 유사 사례 ····· 14
2. 시사점 ····· 17
3. 고시안의 체계 제안 ····· 18

Ⅲ. 고시안 및 주요 내용 ····· 20
1. 목적 ····· 20
2. 정의 ····· 22
3. 적용범위 ····· 24
4. 시스템 운영 방향 ····· 25
5. 운영책임관의 지정 ····· 26
6. 지역문화정보의 범위 ····· 28
7.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 31
8. 시스템 접근 권한 ····· 34
9.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 36
10.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 39
11. 지역문화정보의 백업 ····· 41
12. 전담기관의 예산지원 ····· 43
13. 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 45
14.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 46
15. 보안관리 ····· 49
16. 재난관리 ····· 50
17. 장애관리 ····· 51
18.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 52
19. 매뉴얼 ····· 54
20. 교육 ····· 55
21. 비밀준수 등의 의무 ····· 56
22. 재검토 기한 ····· 57
23. 부칙 ····· 58

제4장 지역문화진흥 정비를 위한 표준조례안 ····· 59
Ⅰ. 표준조례안의 제안 필요성 ····· 59
1. 표준조례안의 의의 ····· 59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법률의 조례 위임 사항 ····· 60
3. 제정·개정 방식의 선택 ····· 61
Ⅱ.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 현황 ····· 62
1. 조례 제정 현황 ····· 62
2.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조례 주요 내용 ····· 63
3. 시사점 ····· 67
Ⅲ.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해설 ····· 69
1. 목적 ····· 69
2. 협력위원회의 설치 ····· 71
3. 협력위원회의 기능 ····· 72
4. 협력위원회의 구성 ····· 74

5. 임기 ····· 76
6. 협력위원회의 운영 ····· 77
7. 제척과 회피 ····· 79
8. 위원의 해임·해촉 ····· 81
9.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 82
10. 수당 등 ····· 83
11. 운영세칙 ····· 84
12. 부칙 ····· 85

Ⅳ.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 표준조례안 해설 ····· 87
1. 목적 ····· 87
2. 정의 ····· 89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 91
4. 시장의 책무 ····· 92
5. 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책 ····· 93
6.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연계 ····· 95
7.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 96
8. 지역문화정보 담당자 ····· 97
9. 보안 및 안전대책 ····· 99
10. 시행규칙 ····· 100
11. 부칙 ····· 101

[부록 1]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102
[부록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106
[부록 3]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안 ····· 112
[부록 4]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119
[부록 5]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 표준조례안 ····· 122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 체제 하에서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시행 2021. 6. 2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는 바, 특히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이 신설되어,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부분에 대하여 근거 및 의무사항, 이용 여부 등의 사항이 명시.

○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주요사항을 규정하더라도 다시 고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1)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고시(안) 수립

○ 지역문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문화정보시스템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환경을 구축.

○ 지역문화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 법제도 환경을 구축.

(2) 지역문화진흥 관련 표준조례(안)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제13조의2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제도 수립을 통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기대효과 도출.

Ⅱ. 주요 연구내용

1. 고시 및 표준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배경 및 시행령 개정 경과 분석
- 지역문화진흥법(2021. 6. 23. 시행) 분석을 통한 법제도 환경 현황을 분석함.

○ 지역문화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고시 제정 필요성에 반영함.
-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에 있어 지역문화정보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행정규칙화.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및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하위 법령 구축 방향을 제시함.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고시 제정안 연구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고시 제정의 목적과 타법령을 분석함.
- 수립배경 및 필요성을 통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고시 수립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함.

○ 타법률의 유사 사례를 분석함.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농지정보시스템, 보건복지 급여 서비스 정보시스템, 보윤통합정보지원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등

○ 타법률의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고시 구성(안)을 제시함.
- 유사 사례를 반영한 고시 필수 포함 내용, 범위 및 구성(안)을 제시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
- 해당 고시(안) 수립 시의 시스템 운영 방안을 해설함.

3. 지역문화진흥 관련 표준조례안 제시

○ 표준조례 제정의 의의
- 조례의 제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표준조례: 법령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 성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

여 시달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표준조례에 따라 조례안을 제.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표준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조례를 많이 참고하게 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한 표준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타법률 분석을 통한 구성(안)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제6조의2제4항에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제13조의2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한 배경 및 필요성을 도출하여 지역문화진흥 관련 표준조례(안) 도출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

○ 타법률의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표준조례 구성(안) 제시.

- 타법률의 유사 사례(조례)의 범위, 내용 및 구성 분석.
- 유사 사례를 반영한 표준조례 필수 포함 내용, 범위 및 구성(안) 제시.
- 해당 표준조례(안) 수립 시 규정 해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
○ 각종 정보시스템 관련 행정입법을 소개하고 분석함.
○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과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해설하는데 있어 입법정책적 관점을 고려함.

2. 연구 절차

○ 발주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시 제정안과 표준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함.
○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 실무를 반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함.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도와 의무감이 부족하므로 지역문화진흥 관련 고시 및 표준조례 등 법제도적 업무추진 환경을 마련함.
○ 법제도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구축 예정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시행기준이 명시된 시행령과 세부지침이 제시되는 고시를 수립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연계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도출하여 배포 등을 지원함.
○ 구축된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정보 관련자들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의무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함.

제 2 장 지역문화진흥 하위법령 정비 배경 및 필요성

Ⅰ. 「지역문화진흥법」 하위법령 정비 배경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배경

(1) 제정이유

○ 법률 제정 당시 지역문화 관련 주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당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2)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제15조).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9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제22조).

○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2. 「지역문화진흥법」 1차 개정

(1)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함.

○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주요내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지역문화진흥법」 2차 개정

(1)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록 및 조사에 관한 연구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어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6조, 제6조의2 신설).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Ⅱ. 하위 법령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지역문화진흥법」 2차 개정의 의의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임.

○ 개정 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도에는 시·도 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만 시·도 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협력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화하였음.

(2) 지역문화실태조사

○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하고, 그 밖에 수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15년 및 2018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임.

○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역 내 대학,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4)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음.

○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지역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인력, 보조금 등 각종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됨.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공공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자체)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자체, (협단체) 한국박물관협회, 사립미술관협회, 광역·기초문화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간) 네이버, 카카오톡, 카드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보유한 지역의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 하려는 목적의 시스템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고, 2021년에는 시스템 구축(플랫폼 구축, DB구축, 시스템 운영비, 하드웨어 도입비 등)을 추진할 계획임.

(5) 전담기관의 지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2.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소요

(1) 대통령령 위임 사항

○ 제6조의2: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지역문화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3: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위임 사항

○ 제6조의2: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Ⅲ.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요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1)]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법으로 상향된 기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 남은 조항을 제5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22조 삭제)

○ 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향유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 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 마.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 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사. 전담기관 지정 대상,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 등을 정함 (안 제8조의3 신설)

○ 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 취소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 (안 제8조의4 신설, 별표 1 신설)

○ 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함 (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

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763?opYn=Y&lsNm=%EC%A7%80%EC%97%AD%EB%AC%B8%ED%99%94%EC%A7%84%ED%9D%A5%EB%B2%95&isOgYn=Y&edYdFmt=2021.+5.+4.&stYdFmt=2020.+11.+1.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소요

○ 시행령안 제8조의2 제2항: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 3 장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시안

Ⅰ. 고시의 제정 필요성

1. 행정규칙 및 교시의 의의

(1) 행정규칙의 의의

○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됨.

○ “행정규칙”의 정의에 대해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예규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음.

(2) 고시의 의의

○ 이 가운데 “고시”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함.

2. 행정규칙 및 고시의 효력

(1) 행정규칙의 효력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준법규설,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는 자주적인 법 형식을 위한 규범 정립 의사나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규설 등이 있음.

○ 판례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법령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고시의 효력

○ 고시는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규칙 유형의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고시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4조의3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하며, 일반처분에 해당하는 고시나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지하는 고시라도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고시를 발령한 경우라면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시 제정의 상위법상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제8조의2 제2항: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고시)

Ⅱ. 정보시스템 관련 유사 사례

1. 유사 사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시행 2019. 6. 12.] [기획재정부훈령 제447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시스템 운영 방향)
제6조(시스템 운영총괄)
제7조(운영의 위탁)
제8조(시스템의 변경)
제9조(변경 대상 업무)
제10조(사용자 교육)
제11조(개발완료 후 조치)
제12조(권리보전조치 등)

제3장 권한 관리

제13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제14조(시스템 접근권한)
제15조(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제16조(사용기관의 등록·변경)
제17조(권한등록 현황 점검)

제4장 재난 및 보안관리

제18조(재난관리)
제19조(장애관리)
제20조(보안관리)

제5장 데이터 관리

제21조(데이터의 관리)
제22조(백업)
제23조(정보의 제공)

제6장 데이터 연계

제24조(연계 요청)
제25조(연계관리 표준)
제26조(연계 점검)

제7장 대외협력

제27조(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
제28조(양해각서 체결)
제29조(사용허가 계약 체결)

부칙<제447호,2019. 6. 12.>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시행 2019. 12. 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78호, 2019. 12. 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체계)
제6조(시스템의 변경)
제7조(시스템 접근권한)
제8조(사용자 접근권한의 등록·변경)
제9조(백업관리)
제10조(장애관리)
제11조(보안관리)
제12조(사용자 교육)
제13조(성과관리)

제14조(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3장 제공서비스

제15조(제공서비스의 종류)
제16조(서비스의 제한)

제4장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연계·제공 및 관리

제17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연계)
제19조(해양공간정보의 제공)
제20조(해양공간정보의 관리)
제21조(품질관리)
제22조(개인정보 안전조치)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가이드 제공)
제24조(재검토 기한)

부칙<제2019-178호,2019. 12. 2.>

○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 [시행 2015. 8. 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83호, 2015.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제7조(사용자 비밀번호)
제8조(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9조(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제10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11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제12조(장애처리)
제13조(점검 및 복구)
제14조(백업)

제3장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 활용

제15조(공동활용 범위)
제16조(공동활용의 요청)
제17조(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제18조(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
제19조(보안각서 수령증 작성·제출)

제4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보안관리)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2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5장 보칙

제23조(농지정보시스템 교육)
제24조(농지정보시스템 평가)
제25조(준용)

부칙<제183호,2015. 8. 17.>

○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8. 9. 27.] [문화재청예규 제195호, 2018. 9.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활용 범위)

제2장 문화재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시스템의 구축)
제5조(문화재 방재정보의 제공)
제6조(시스템 운영)
제7조(운영조직도)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제9조(자료 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제10조(서비스의 중단)
제11조(보안대책)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3조(소유권)
제14조(개발 표준 준수)
제3장 교육 및 행정관리
제15조(교육)
제16조(행정관리)
제17조(준용)
제18조(유효기간)
부칙<제195호,2018. 9. 27.>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0. 7. 1.] [보건복지부예규 제7호, 2010. 7.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제4조(책무)
제2장 기준의 관리 체계
제5조(기준 주무부서)
제6조(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제7조(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제3장 기준 관리의 대상 및 원칙
제10조(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
제11조(기준 관리 대상)
제12조(공통업무지침의 운영)
제13조(기준 관련 기본원칙)
제4장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
제14조(기준의 사전협의)
제15조(사업의 신설)
제16조(법령의 제정·개정)
제17조(사업지침의 제정·개정)
제18조(기준의 개정 요청)
제19조(조정 요청)
제5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0조(운영의 위탁)
제21조(보안대책)
제22조(권한관리)
제23조(시스템의 변경)
제24조(정보의 제공)
제25조(전자화 대상 사업)
부칙<제7호,2010. 7. 1.>

○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 [시행 2019. 7. 1.] [산림청훈령 제1407호, 2019. 7. 1.,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장 산림공간정보의 관리
제5조(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
제6조(산림공간정보의 심의 등)
제7조(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산림공간정보의 시행 및 평가)

제10조(기준좌표체계의 적용)
제11조(품질관리)

제3장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제12조(공공측량)
제13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제14조(자료형식)
제15조(지형지물 코드)
제16조(연구·개발·변화확산 등)

제4장 공간정보의 이용 및 유통

제17조(산림공간정보의 활용)
제18조(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
제19조(산림공간정보의 내·외부기관 유통)
제20조(산림공간정보의 신청 등)
제21조(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제22조(산림공간정보의 공개)

제5장 산림공간정보센터 운영

제23조(산림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24조(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제6장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25조(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제26조(산림공간정보의 분류)
제27조(공간정보의 취급)

제7장 산림공간정보 보호 대책

제2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제2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제30조(국외반출 금지)
제31조(외국인 보안관리)
제32조(외주 용역)
제33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8장 공간정보 보안지도·점검 및 교육

제34조(보안지도 및 점검)
제35조(보안교육)
제36조(보안사고 조사)
제37조(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제9장 보 칙

제38조(준용)
제39조(재검토 기한)

부칙<제1407호,2019. 7. 1.>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탁기관)
제4조(업무범위)
제5조(예산지원)
제6조(감독 및 보고)
제7조(소유권)
제8조(비밀유지)
제9조(자문)
제10조(재검토기한)

부칙<제2014-89호,2014. 3. 7.>

2. 시사점

○ 정보시스템 관련 행정규칙은 대체로 총칙,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연계 및 활용, 운영 조직 또는 위탁, 사용자 또는 접근 권한,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교육 등으로 20개 조문 내외로 구성됨.

○ 정보보호에 중점이 있는 행정규칙과 연계 및 활용에 중점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은 위탁기관 또는 전담기관(센터)에서 담당함.

○ 주무 부처의 역할 및 수탁기관의 업무범위가 효율적으로 분담되도록 설정되고, 감독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둠.

○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교육 규정을 둠.

3. 고시안의 체계 제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시스템의 구축
- 제4조(시스템 운영 방향)
- 제5조(운영책임관의 지정)
- 제6조(지역문화정보의 범위)

○ 제3장 시스템의 운영 관리
- 제7조(전담기관의 업무범위)
- 제8조(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제9조(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 제10조(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 제11조(지역문화정보의 백업)
- 제12조(전담기관의 예산지원)
- 제13조(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 제4장 정보보호 대책
-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 제15조(보안관리)
- 제16조(재난관리)
- 제17조(장애관리)
- 제18조(지역문화정보의 공개)

○ 제5장 보칙

- 제19조(매뉴얼)
- 제20조(교육)
-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 제22조(재검토 기한)

○ 부칙

Ⅲ. 고시안 및 주요 내용

1.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의 취지

○ 목적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을 명시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8조의2 제2항에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음.

(2) 규정의 내용

○ 이 고시의 근거 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라는 점을 명시함.

○ 고시 제정의 근거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규정함.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정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전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규정의 취지

○ 행정규칙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의 규정이 있는 사항은 상위법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이 고시의 해석을 위해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의 규정을 둠.

○ 이 고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지역문화정보,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전담기관 등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둠.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정보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수집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률용어로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기로 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이지만 정의 규정이 없어 이 고시에서 정의함.

○ 전담기관 용어는 법률과 시행령에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한 근거규정만 있고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고시에 규정하기로 함.

○ 현행화, 사용자 등의 용어는 이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고시의 해석에 필요한 용어로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두기로 함.

(3) 유사입법례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문화재 방재시설,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 현황,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문화재 방재예보 등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서비스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5.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해양공간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규정의 취지

○ 행정규칙은 본래 행정기관 또는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수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시스템의 경우 연계·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보의 입력 업무는 행정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의 위임과 위탁이 많아짐에 따라 접근 가능한 사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특히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규정의 내용

○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시스템을 관리, 연계, 활용하는 사용자가 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자(운영 수탁자를 포함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4. 시스템 운영 방향

제4조(시스템 운영 방향) 시스템 운영은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시스템의 운영 방향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고시를 해석하거나 업무의 방향을 설정할 때 원칙이 되는 규정임.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전담기관, 시스템을 관리, 연계, 활용하는 기관, 단체, 사용자는 시스템 운영 방향을 숙지하고 업무 처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2) 규정의 내용

○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고 시스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 등을 규정함.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시스템 운영 방향)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강화
2.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통계 생산·제공 등 정책 개발 지원
3. 국제수준의 선진시스템 지향

5. 운영책임관의 지정

제5조(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관리, 장애관리
5. 지역문화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계관리
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해당 부에 시스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운영책임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에서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담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규정의 내용

○ 시스템의 규모와 예산, 관리되는 정보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운영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책임관의 주된 업무는 전담기관이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조정을 주된 업무 범위로 하였음.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권한총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6. 지역문화정보의 범위

제6조(지역문화정보의 범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관리하는 지역문화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시·도 협력위원회에 관한 정보
3. 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과 그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
6.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한 정보
7.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관한 정보
8.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에 관한 정보
9.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정보
10. 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에 관한 정보
11.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정보
12.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에 관한 정보
13.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관한 정보
14. 지역문화와 관련한 조직, 법령, 조례 등 지역문화행정에 관한 정보
15. 지역문화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의 정의에 관해서는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나, 수집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지역문화정보의 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

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정보들로 함.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규정함.
○ 이 법에 따른 계획, 위원회 운영, 문화시설, 생활문화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지역문화 관련 재정과 기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문화예술진흥법 상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이를 포함함.
○ 지방문화원에 관한 정보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이를 포함함.
○ 지역문화 관련 조직, 법령, 조례, 연구 결과 등은 개별적인 정보원에서 수집할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에 함께 포함시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사입법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 범위) ①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결과
2.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6.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반출오염토양의 전자인계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8.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결과
9.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타 기관 관측망 및 지역지하수질측정망의 수질오염실태 측정정보
10.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11.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른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및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12.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정보화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정보 범위)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
2. 법제44조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목록의 제공
3.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
4.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결과의 공개
5. 기타 각종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 등 시험자료와 연구자료

7.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제7조(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3.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통계적 분석
4.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5. 유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협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담당자 교육
7.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서는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동조 제2항 제7호에서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정의 내용

○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지역문화정보의 처리,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지역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직원 등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시스템 활용 지원과 사용자 또는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바 이를 전담기관의 업무에 포함시킴.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을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정정보(데이터)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장애 및 침해, 재해/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운영
6. 사용자 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스템 사용자 교육
8.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정의된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시스템 운영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스템 사용자 교육
8.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정의된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3조(산림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산림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정보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의 구축·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유통·공유·공동이용·제공·활용 및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총괄
2.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주제도의 효율적인 공유·활용
3.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4. 산림주제도의 속성 및 좌표체계의 표준화
5. 국·공·사유림 산림사업 개선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6. 산림공간정보 관련 실무 협의회의 구성·운영
7. 그 밖에 산림정보(산림공간정보, 산림통계 등 포함)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유지·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시스템 접근 권한

제8조(시스템 접근 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은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문화정보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분포한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사용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음.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접근 권한의 명확성을 위해 시스템 사용 및 접근 가능한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가 명확해야 할 것임.
○ 시스템 접근 권한 업무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임.
○ 전담기관의 장에게 특히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를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 명확성을 제고함.

(2) 규정의 내용

○ 제1항에서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제2항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함.
○ 제3항은 사용자의 권한관리담당자가 사용자별로 접근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권한총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스템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② 재정정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차별화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과장은 권한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정보원은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시스템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5조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따라 세분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일반 개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정규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할 경우 접근권한의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분야별 책임자의 문서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책임자는 반기마다 개인정보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하고 점검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로그인 일정 횟수 이상 실패 시 접속이 중단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실패이유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제9조(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①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 사용자의 권한이 보직 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함.

(2) 규정의 내용

○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신청서 또는 권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사용자 접근권한의 등록·변경) ① 각 기관의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사용자 권한의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7조(재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① 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및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제1항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① 각 부처의 사용자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의 권한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등록(변경)신청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록 □ 변경) 신청서

결재		

1.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ID ※ 반납시 작성	
신청IP		연락처	
소 속		시설유형	
2. 신청사항 정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업무			
신청권한	□ 계획·회의 □ 통계 □ 인력 □ 행정정보 □ 시설 □ 기록물 □ 보고 □ 예산 □ 생활문화 □ 전문인력 □ 문화도시/지구 □ 정보 일체 □ (비정형/안전점검관리)		

3. 사 유

□ 신규채용 □ 승진 □ 보직변경 □ 업무변경
□ 퇴직 □ 징계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반납인) : 서명/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10.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제10조(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해당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적실성 있는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정보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입력되고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함(제2조 참조).

(2) 규정의 내용

○ 전담기관의 장이 시스템의 정보가 현행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 전담기관의 장이 정보의 현행화 노력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해당기관에 정보의 수정과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유사입법례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데이터 표준 준수) ①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에도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4조(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산림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②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유지·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11. 지역문화정보의 백업

제11조(지역문화정보의 백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도난·훼손·멸실·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파괴·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의 전자기록물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백업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산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 및 관련 정보들이 재해 또는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가 훼손, 멸실, 파괴, 변조되지 않도록 장소와 시스템 측면에서 관리해야 함.
○ 백업된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시하였는 바, 장소를 분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것임.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백업관리) 운영책임관은 시스템 및 해양공간정보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데이터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2조(백업) ① 제21조에 따라 데이터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백업방법 및 기간 등 제1항에 따른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2. 전담기관의 예산지원

제12조(전담기관의 예산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담기관의 업무 중 특히 이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관한 경비 지원을 명시함.
○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 용도를 명시함.

(2) 규정의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을 명시함.
○ 지원받은 예산의 목적에 따른 사용 의무와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규정함.

(3) 유사입법례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예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

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의해 설립된「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13. 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제13조(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전담기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담기관의 관계를 규정함.

(2) 규정의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

○ 전담기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

(3) 유사입법례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14.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음(동법 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규정의 내용

○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함.

○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3) 유사입법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보안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등이 분실·도난·훼손·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원은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

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개인정보 안전조치) 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보안관리

제15조(보안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규정의 취지

○ 보안관리란 네트워크 통신 환경, 시스템 및 응용 서비스 따위를 허가되지 않은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또는 기능을 의미함.

○ 지역문화정보 가운데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함.

(2) 규정의 내용

○ 보안관리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임.

○ 해당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접근에는 위변조 예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무부처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책임자인 운영책임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유사입법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0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재난관리

제16조(재난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규정의 취지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데, 사람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재난도 포함되지만 특히 시스템과 정보에 대한 재난도 포함됨.

○ 대표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정전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시스템 파손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규정의 내용

○ 재난관리규정에는 사람에 대한 재난대비, 시스템에 대한 재난 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난관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절차는 보안관리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규정과 보안관리규정 간에는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임.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8조(재난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재난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 (재난관리)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7. 장애관리

제17조(장애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규정의 취지

○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과 재난에 대비한 처리 절차 이외에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시스템 장애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이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드웨어보다 운영 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재난은 주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면 장애관리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기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2) 규정의 내용

○ 장애관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절차는 장애관리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장애관리규정과 재난관리규정, 보안관리규정 간에는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임.

(3) 유사입법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9조(장애관리) ① 재정정보원은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정보원 및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장애관리)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8.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제18조(지역문화정보의 공개)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의 연계와 연구 등에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통계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임.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권한과 책임을 운영책임관에게 부여함.

○ 지역문화정보의 공개시 관련 법령 이외에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지역문화정보 공개의 공개 등극을 공개와 부분공개로 구분함.

○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음.

○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해양공간정보의 제공)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 등급의 해양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의 해양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3. 그 밖에 운영책임관이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19. 매뉴얼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절차와 업무분장, 점검표,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 등은 담당자의 보직 변경이나 업무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연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2) 규정의 내용

○ 매뉴얼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책임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였음.

○ 전담기관의 장은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스템 사용법 등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매뉴얼 등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 각종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작성되어야 함.

○ 매뉴얼 등은 필요한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을 것이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

(3) 유사입법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 운영지침」
제24조(업무가이드 제공) 운영책임관은 원활한 분석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가이드를 혜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업무가이드 제공) 운영책임관은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가이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0. 교육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속 직원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스템 관리에 대한 교육은 전담기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함.

(2) 규정의 내용

○ 전담기관은 매년 일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전담기관은 소속 기관 직원 이외에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방법과 절차는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음.

(3) 유사입법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3조(농지정보시스템 교육)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21.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규정의 취지

○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주된 내용은 정보 관련 취급 업무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비밀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밀 누설이나 도용에 대한 기관 차원의 책임도 부담함.

(2) 규정의 내용

○ 비밀준수 등의 의무는 전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속되었던 사람,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에게 부담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교육과 의무를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유사입법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재검토 기한

제2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행정규칙에 명시해야 함.

○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내용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이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된 것이어서 재검토조항을 설정하기로 함.

(2) 규정의 내용

○ 재검토기한 설정기준의 원칙인 3년의 유효기간을 이 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이 고시의 본칙의 마지막에 재검토기한을 규정함.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규정의 취지

○ 부칙에는 일반적으로 법령의 시행일 또는 경과규정 등을 두게 됨.
○ 이 고시의 시행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선을 예방함.

(2) 규정의 내용

○ 이 고시는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고 고시 시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발령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규정함,

(3) 유사입법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지역문화진흥 정비를 위한 표준조례안

Ⅰ. 표준조례안의 제안 필요성

1. 표준조례안의 의의

(1) 조례 제정권의 범위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조례제정권은 자기책임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결과, 조례로 규율할 사항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가 대상이 됨.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니며, 자치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규칙으로 규율해야 함.

(2) 표준조례의 의미와 기능

○ 일반적으로 표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를 변경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표준조례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법질서의 통일성 확보 및 조례의 원활한 시행 등이 가능함.

○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순응하여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의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장점도 있음.

○ 표준조례와 달리 정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어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거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

(3) 표준조례의 한계

○ 표준조례는 사용이 의무화되는 경우, 자치행정의 보장을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용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표준조례가 자치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거의 표준조례에 따르고 있는 형편이어서 각 지역의 특유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자주법으로서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준조례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음.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법률의 조례 위임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정·개정 방식의 선택

○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체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에서 바람직하나,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면 자치법규의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일반적인 자치법규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관련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관련 조례의 경우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조례, 생활문화진흥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여 편입할 수도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시행 현황이 다르므로 일단 제정안을 제안하여 설명하되 제정 또는 개정의 선택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맡기기로 함.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제정이 가능한 바,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에 하나의 장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조례의 제정도 가능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제정안을 제안하고 제개정 방식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지역문화정보

시스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계·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표준조례안 작성이 필요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제정안을 원칙으로 설명하되 제정 또는 개정 방식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Ⅱ.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 현황

1. 조례 제정 현황

(1) 광역자치단체

○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한 경우
-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한 경우
-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없고,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도시 기본 조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 기초자치단체

○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한 경우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

흥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한 경우

-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등

2.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조례 주요 내용

○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시행 2014. 10. 30.][경상남도조례 제3947호, 2014. 10. 30., 제정]

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역문화 유공자 표창 등)
제7조(시행규칙)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 10. 12.][전라북도조례 제4107호, 2015. 10.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4조(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 [시행 2020. 1. 1.][부산광역시조례 제6069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제9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제3장 생활문화진흥	제10조(생활문화진흥 사업)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3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회의 개최 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해촉)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1조(기금운용심의분과위원회) 제2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3조(수당 등) 제24조(운영세칙)
제5장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	제25조(기금의 설치) 제26조(기금의 재원) 제2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9조(회계관계공무원) 제30조(준용)
제6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탁) 제32조(포상)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시행 2016. 10. 24.] [조례 제3829호, 2016. 10. 24., 제정]
- [시행 2017. 6. 12.][경상북도조례 제3934호, 2017. 6. 12., 전부개정]

<table>
<tr><td>제1장 총칙</td><td>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td></tr>
<tr><td>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td><td>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협력활동 지원)</td></tr>
<tr><td>제3장 생활문화진흥</td><td>제10조(생활문화 진흥)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 지원 범위)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td></tr>
<tr><td>제4장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td><td>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5조(구성)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회의)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2조(수당 등)
제23조(운영세칙)</td></tr>
<tr><td>제5장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td><td>제24조(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구분·운용)
제26조(기금의 재원)
제27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30조(기금의 재단 출연)
제31조(회계관계공무원)</td></tr>
<tr><td>제6장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td><td>제32조(설치)
제33조(기능)
제34조(구성 등)
제35조(운영)
제7장 보칙</td></tr>
</table>

	제36조(협력체제 구축) 제37조(시행규칙)
	부칙 <제3934호, 2017. 6. 2.>

- 시행계획 및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내용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사항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 10. 12.] [전라북도조례 제4107호, 2015. 10.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4조(시행규칙)
	부칙 <제4107호, 2015. 0. 2.>

3. 시사점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있고 특히 조례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표준조례안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기존의 지역문화진흥조례 또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규정된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화예술위원회 존속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규 설치가 자칫 위원회 중복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이어야 하고 문화재단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소 다른 것이지만, 실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인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경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규정은 해당 지역문화진흥조례에 하나의 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를 전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는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시행되고 해당 조례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임.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 10.>
5.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인문, 시각 및 공연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설치) 도지사는 소통과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기획, 도민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통한 완전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1. 3.>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3. 지역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기획 <개정 2019. 1. 3.>
4. 문화예술정책 추진상황 점검·성과평가 <신설 2019. 1. 3.>
5. 문화예술분야 현장 실태 조사 <신설 2019. 1. 3.>
6. 예술인 복지증진관련 심의·자문 <신설 2019. 1. 3.>
7. 문화예술 원탁회의, 간담회 개최 <신설 2019. 1. 3.>
8. 도민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 <신설 2019. 1. 3.>
9.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신설 2019. 1. 3.>
10. 지역문화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3.>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3.>

Ⅲ.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해설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의 취지

○ 목적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목적 규정은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지침이 됨.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제6항에서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있으므로 목적 규정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밝히면서 조례의 목적을 함께 밝힘.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함.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간결하게 밝힘.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2. 협력위원회의 설치

제2조(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도지사(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력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적 위원회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 등을 목적으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협력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와 권한의 소재를 밝혔음.

(2) 규정의 내용

○ 위원회의 명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하였음.

○ 설치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였음.

○ 협력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자문위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에 해당함.

(3) 유사입법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협력위원회의 기능

제3조(협력위원회의 기능)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시/도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시/도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규정의 취지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해야 함.

○ 심의 권한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것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목적에 따른 사항들로 규정하였음.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2) 규정의 내용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 법률에서 심의 사항으로 한 것과 대체로 비슷하게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다고 판단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였음.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5.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협력위원회의 구성

제4조(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1) 규정의 취지

○ 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상과 유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권한 등은 법률에 따르고 위원의 자격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해야 함.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협력위원회와 대체로 같은 구성 원칙에 입각하여 시·도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협력위원회 위원장을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였음.
○ 위원의 임명권은 시장/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하였음.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5.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규정의 취지

○ 위원의 임기는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함.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없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2) 규정의 내용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음.

- 다만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무방함.

○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음.

(3) 유사입법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6. 협력위원회의 운영

제6조(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이고,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됨.
○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며, 협력위원회의 운영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의장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협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규정은 최소화함.

(2) 규정의 내용

○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명시함.
○ 문화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만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간주 규정을 신설할 수도 없음.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협력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1) 규정의 취지

○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그 외에도 위원의회 심의와 의결의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규정의 내용

○ 협력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함.

○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함.

(3) 유사입법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7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8.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규정의 취지

○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조례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위원의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위원을 대신하여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규정을 둘 수 있음.

(2) 규정의 내용

○ 해임 및 해촉의 권한은 임명권자인 시장/도지사에게 있음.

○ 공무원위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해임,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함.

○ 해임 또는 해촉 사유는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2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신청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협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자료 및 의견 수집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함.

(2) 규정의 내용

○ 협조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기관과 단체로 규정하고, 자료 이외에 의견 제출 요청도 가능하도록 함.

○ 협조 요청을 협력위원회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4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에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규정의 내용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사입법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규정의 취지

○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임.

(2) 규정의 내용

○ 운영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유사입법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 50명 이내의 심의위원 전원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종전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의] 조항 중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력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협력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협력위원회” 또는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1) 규정의 취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는 지역문화진흥조례 혹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률이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아님.
○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협력위원회 설치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지역에 설치된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기능상 중복의 여지가 있음.

(2) 규정의 내용

○ 조례에 따라 협력위원회와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할 수도 있으나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 현행 문화예술위원회를 협력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 기존 위원회 형태로 운영중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시·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부칙 2조를 적용함.

(3) 유사입법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위촉된 위원에 대한 권한은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

Ⅳ.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 표준조례안 해설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도/○○시·군·구 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의 취지

○ 목적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목적 규정은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지침이 됨.

○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있으므로 목적 규정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밝히면서 조례의 목적을 함께 밝힘.

(2) 규정의 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도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

○ 조례 제정의 법률상 근거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간결하게 밝힘.

(3) 유사입법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미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란 ○○시·도/○○시·군·구(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공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규정의 취지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함.

○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정의규정은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함.

(2) 규정의 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였음.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설치 주체와 기능을 명확히 함.

○ 지역문화진흥법상 전담기관이 여럿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지시하는 전담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사입법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동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하략)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관할 보건소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규정의 취지

○ 조례 간의 충돌과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설하는데 있어 해석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방식을 택함.

(2) 규정의 내용

○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함.

○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이나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임.

(3) 유사입법례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 문화정보를 지역문화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문화진흥,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시장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임.

○ 이러한 규정은 시장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

(2) 규정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을 규정하였음.

○ 해당 시스템의 활용은 지역문화진흥,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 진흥 등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유사입법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책

제5조(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시의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의 제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정보 연계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정보 수집·관리·활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정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규정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확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2) 규정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해야하는 시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정보의 수집, 관리 그리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협력 등에 관한 것임.

○ 지역문화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유사입법례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1. 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복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복지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복지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가평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연계

제6조(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연계) ① 시장은 ○○시의 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서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협조, 연계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2) 규정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경우,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시, 행정응원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정보시스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정보 제공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유사입법례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관계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제7조(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① 시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거나 입력해야 할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은 지역문화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통계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되는 정보는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의 진흥 및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 향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규정의 내용

○ 정보의 현행화 의미가 드러나도록 규정하고, 현행화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함.

○ 지역문화정보가 현행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 의무가 필수적인 바, 이에 관해 규정함.

(3) 유사입법례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5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형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하여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지역문화정보 담당자

제8조(지역문화정보 담당자) ① 시장은 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연계·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시 문화정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 담당자는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담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문화 담당 부서의 장은 문화정보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문화정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두도록 함.
○ 담당자의 업무 수행 범위와 협력 관계에 관해 규정함.

(2) 규정의 내용

○ 해당 지역의 문화정보 담당자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것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
○ 문화정보 담당자는 가급적 지역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소속 부서를 명시하기로 함.
○ 문화정보 담당자의 업무는 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연계,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며,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전담기관과 협력하도록 함.
○ 문화정보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지원하도록 함.

(3) 유사입법례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4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담당자 지정 등)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드론연습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②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선택권 보장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9. 보안 및 안전대책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문화 담당 부서의 장은 문화정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취지

○ 지역의 문화정보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관련 정보의 보호 등 보안 및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큼.

(2) 규정의 내용

○ 지역의 문화정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책임을 문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둠.

- 문화정보 담당자의 소속과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소관 부서는 정보 관련 부서보다 문화정보를 현행화하고 활용하는 문화 담당 부서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유사입법례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30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0.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규정의 취지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말함.

○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될 수도 있고(위임규칙), 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 이른바 '직권규칙'으로 구분됨.

(2) 규정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3) 유사입법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규정의 취지

○ 대부분의 자치법규는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됨.

○ 본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함.

(2) 규정의 내용

○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없고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되어 오히려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함.

- 조례 시행을 위한 업무 준비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3) 유사입법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1]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7590호, 2020. 12. 8.,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록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신 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신 설>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역문화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지역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현황 3.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등 현황 4.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정보의 수집 및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역문화진흥 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정보의 수집·관리 구축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제10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관련 업무
<신 설>	제8조의4(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table>
<tr><td>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5. (생 략)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d>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r>
<tr><td>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⑩ <생 략></td><td><삭 제></td></tr>
<tr><td>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td><td>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td></tr>
<tr><td><신 설></td><td>별표 1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table><tr><td>위반사항</td><td>근거 법조문</td><td>처분기준</td></tr></table></td></tr>
</table>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차	2차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그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부록 3]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고시안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정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전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시스템의 구축

제4조(시스템 운영 방향) 시스템 운영은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관리, 장애관리
5. 지역문화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계관리
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문화정보의 범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관리하는 지역문화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시·도 협력위원회에 관한 정보
3. 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과 그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
6.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한 정보
7.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관한 정보
8.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에 관한 정보
9.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정보
10. 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에 관한 정보
11.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정보

12.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에 관한 정보
13.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관한 정보
14. 지역문화와 관련한 조직, 법령, 조례 등 지역문화행정에 관한 정보
15. 지역문화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3.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통계적 분석
4.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5. 유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협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담당자 교육
7.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 접근 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 ①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해당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문화정보의 백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도난·훼손·멸실·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파괴·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예산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정보보호 대책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난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장애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역문화정보의 공개)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매뉴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록(변경) 신청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록 □ 변경) 신청서

결재		

1.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성 명		ID ※ 반납시 작성	
신청IP		연락처	
소 속		시설유형	
2. 신청사항 정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업무			
신청권한	□ 계획·회의 □ 통계 □ 인력 □ 행정정보 □ 시설 □ 기록물 □ 보고 □ 예산 □ 생활문화 □ 전문인력 □ 문화도시/지구 □ 정보 일체 □ (비정형/안전점검관리)		

3. 사 유

□ 신규채용 □ 승진 □ 보직변경 □ 업무변경
□ 퇴직 □ 징계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반납인) : 서명/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부록 4]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도지사(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력위원회의 기능)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시/도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시/도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협력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협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종전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의] 조항 중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력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협력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협력위원회” 또는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록 5]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 표준조례안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도/○○시·군·구 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란 ○○시·도/○○시·군·구(이하“시”라 한다)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공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 문화정보를 지역문화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문화진흥,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시의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의 제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정보 연계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정보 수집·관리·활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시 문화정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연계) ① 시장은 ○○시의 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① 시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거나 입력해야 할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은 지역문화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통계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문화정보 담당자) ① 시장은 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연계·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시 문화정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 담당자는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담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문화 담당 부서의 장은 문화정보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문화 담당 부서의 장은 문화정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수립 연구

발 행 일 : 2021년 3월
발 행 처 : 한국문화정보원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01호
(Tel.)02-3153-2820 (Fax)02-3153-2859
http://www.kcisa.kr/
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Tel.)032-860-7114 (Fax)032-863-1333
인 쇄 처 : 인쇄나라
(주소)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0-4
(Tel.)02-875-1871

<비매품>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의
연구결과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